

조문별 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농어촌정비사업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

◇ 제정 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1항 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 제정

◇ 주요내용

가.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(안 제3조)

-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범부처 공통기준인 「국가재정법」 제29조에 따른 '예산안편성지침' 요율 적용

나. 측량·설계 및 공사감리의 대가산출 및 적용(안 제4조, 제5조)

- 요율 등 기준 적용의 혼란이 없도록 대가 산출 방법과 적용방법 명확화

다. 추가업무비, 위탁관리비 기준(안 제6조, 제7조)

-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을 준용하여 요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 대가 지급
- 공공기관이 위탁시행자이고,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 위탁관리비 지급 기준 명시

라. 재검토 기한(안 8조)

-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하도록 기한 명시

마. 시행일(부칙)

-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1항 시행일(공포 '24.7.3, 시

행 '25.1.4)에 맞춰 시행하도록 명시